#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87

발의연월일: 2024. 9. 12.

발 의 자:김태선・이기헌・권칠승

정준호 · 김영배 · 김태년

한민수 · 김준형 · 박 정

이용우 · 최기상 · 김주영

이훈기 • 박균택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 근로 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 상과 경제성장,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최근 정규직의 직접고용에서 비정규직 확대, 기간제·파견 ·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 등 국내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 불안 정성이 증가하고 있으며, 고용형태별 또는 성별 등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로 심각한 상황임.

이에 정부가 고용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,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원칙을 명시하고자 함. 또한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 현황만 공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무별

고용형태, 근속연수,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3조 및 제15조의6).

#### 법률 제 호

##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시책을 수립·시행할 것

제15조의6제1항 중 "고용형태 현황"을 "고용형태 현황(직무별 고용형태, 근속연수, 직무 현황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용형태 현황 공시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본원칙) 국가는 이 법에	제3조(기본원칙)
따라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하	
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	
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2의2.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
	함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
	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
	록 시책을 수립·시행할 것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제15조의6(고용형태 현황 공시)	제15조의6(고용형태 현황 공시)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	①
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	
주는 매년 근로자의 <u>고용형태</u>	<u>고용형</u>
<u>현황</u> 을 공시하여야 한다.	태 현황(직무별 고용형태, 근속
	연수, 직무 현황을 포함한다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